

## 과거사 명예회복의 첫걸음, 확정기록 무료 열람·등사

- 재심 청구 목적 재판확정 사건기록 열람·등사 수수료를 면제하는 「사건기록 열람·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」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-

앞으로 재심청구권자가 재심 청구를 위해 재판확정 사건기록 열람·등사를 신청하는 경우, 수수료 없이 문서를 교부받을 수 있게 됩니다.

과거사 희생자들을 비롯하여 억울하게 유죄판결 등이 확정된 국민들이 스스로 재심절차를 거쳐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재판확정 사건기록의 열람·등사가 필수적임에도, 지금까지 재판확정 사건기록을 열람·등사하려면 그 목적이나 사유와 관계없이 1건당 500원의 수수료 및 문서 1장당 50원의 추가 수수료를 납부해야 했습니다.

이에 법무부는 국민들이 재심청구권을 보다 실효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, 재심청구권자가 재심 청구를 목적으로 재판확정 사건기록의 열람·등사를 신청하는 경우 그 수수료를 면제\*하는 특례 규정을 마련하여, 오늘(7. 14.) 「사건기록 열람·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」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.

\* 수수료 일체를 면제하되, 신청권 남용 방지를 위해 동일 사건 반복 신청 시 수수료 부과 가능

이번 법무부령 개정을 통해, 오는 9월부터 「형사소송법」상의 재심청구권자는 물론, ▲여순사건, ▲제주4·3사건, ▲3·15의거, ▲부마민주항쟁, ▲5·18민주화운동 등 과거사 관련 특별법에 규정된 형사사건의 재심청구권자가 확정기록의 열람·등사를 신청하는 경우 그 수수료가 면제될 예정입니다.

이번 개정은 지난 5월 ‘재판 중 기록 열람·등사 수수료 면제’에 이어 주권자인 국민들이 형사사법제도를 절차적 비용 부담 없이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의 일환으로,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“향후에도 열람·등사절차를 비롯하여, 형사사법절차에서 사건관계인들이 소외되지 않고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는 개선방안을 다각도로 추진할 계획이다.”라고 밝혔습니다.

|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담당 부서 | 법무부 검찰국 검찰과     | 책임자 | 과장    | 나하나 (02-2110-3248) |
|       |                 | 담당자 | 검사    | 홍석원 (02-2110-3694) |
|       | 대검찰청 공판송무부 공판1과 | 책임자 | 과장    | 윤효선 (02-3480-2360) |
|       |                 | 담당자 | 검찰연구관 | 류수현 (02-3480-2356) |

